

## 긴급지원비 신청서

(4쪽 중 1쪽)

### 재외공관의 장(담당영사) 작성 사항

<b>지원 비용 항목</b>	[ ] 긴급 의료비용 [ ] 국내 송환비용 [ ] 송환 전 숙식비 [ ] 그 밖에 필요한 비용		
<b>지원 요청액</b>		<b>지원 사유</b>	
<b>재외공관명</b>		<b>담당영사</b>	
<b>그 밖의 참고 사항</b> (신청인의 최근 5년 이내 긴급 지원비 신청 여부 등)			

### 신청인 작성사항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여권번호
	전화번호 (휴대전화: _____, 집: _____, 직장: _____)		
	직업(직장명)	건강상태(장애/질병)	
	현지 주소	국내 주소	
	국내 등록기준지	전자우편	

가족 사항	신청인과의 관계	성명	생년월일	전화번호 (휴대전화/집/직장)	비고	
		참고사항				

그 외 연고자	신청인과의 관계	성명	생년월일	전화번호 (휴대전화/집/직장)	비고	
		참고사항				

구분	긴급지원비 신청 경위(상세)
해당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오게 된 경위 (금회 여행 경로)	
사건·사고 발생 경위	
본인의 자구 노력 사항	
가족 및 연고자 지원 여부	
지원요청사항 및 그 밖의 참고사항	
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	확 인 (√ 표시)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해당란에 [√] 표시 바랍니다. (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집·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(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진단서 등 포함)  - 인적사항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직업, 주소, 등기기준지, 여권·신분증 사본(여권번호 포함), 연락처 등)  -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(가족 및 연고자, 가족 및 연고자의 연락처 등)  - 소득·재산·근로능력·취업상태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 - 장애,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함을 소명하기 위한 서류  - 그 밖에 신청 자격요건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, 금융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- 긴급지원비 신청 자격요건 충족 여부 판단  - 금융정보등 확인 후 지원 자격 미달 시 비용 환수 목적(소송 제기 등)  - 그 밖에 대상자의 생명·신체·재산 등에 대한 긴급한 보호 필요 시 대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- 공공기관 기록물(영사민원시스템 기재 포함)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에 따라 준영구로 보존  - 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전자서류는 신청 접수 시부터 5년간 보유(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고지  -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.</p>	<p>동의 [ ]</p> <p>미동의 [ ]</p>
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(제3자 제공 동의)	확 인 (√ 표시)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해당란에 [√] 표시 바랍니다. (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교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종로구청장, 인천광역시청, 인천공항경찰단장,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,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및 소속 변호사, 귀국 항공편 항공사, 치료·입원 시 해당 병원의 병원장, 입소 시 해당 구호기관의 장, 그 밖에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긴급지원비 신청 자격요건 충족 여부 판단</li> <li>- 병원 입원 또는 구호기관 입소 의뢰</li> <li>- 금융정보등 확인 후 지원 자격 미달 시 비용 환수(소송 제기 등)</li> <li>- 그 밖에 대상자의 생명·신체 등에 대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제공하려는 개인정보 항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적사항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직업, 주소, 등록기준지, 여권번호, 연락처 등)</li> <li>-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(가족 및 연고자, 가족 및 연고자의 연락처 등)</li> <li>- 장애,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함을 소명하기 위한 서류</li> <li>- 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, 금융 관련 자료 등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공기관 기록물(영사민원시스템 기재 포함)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에 따라 준영구로 보존</li> <li>- 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전자서류는 원칙적으로 정보 제공 시부터 5년간 보유(지원대상자 보호 등 이용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)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고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.</p>	<p>동의 [    ]</p> <p>미동의 [    ]</p>

**긴급지원비 신청 관련 서약**

- 본인은 「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」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비를 신청합니다.
- 본인은 긴급지원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및 진술 내용에 어떠한 거짓이나 부정도 없음을 서약합니다.
- 본인은 만일 제출서류나 진술내용에 거짓이나 부정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 반환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.

※ 「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」 제19조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(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사고 담당영사 포함)은 재외국민의 상태가 정신질환, 의식불명 등으로 재외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서를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담당영사 (서명 또는 인)

주            대사관·총영사관(            분관·출장소)의 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금융정보등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 2.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3. 장애,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함을 소명하기 위한 서류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기본증명서 2.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 3. 가족관계증명서

**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**

본인은 긴급지원비의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)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**유의사항**

- 「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」 제10조제3항에서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사건·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19조제1항은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긴급지원비 지원은 「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」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건·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히 그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예외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.
- 신청인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대리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제시해야 합니다.
- 대리신청을 위하여 신청인 본인은 아래 '위임장'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**위임장**

본인은 「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」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비 지원 신청을 위한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위임한 사람(신청인)

(서명 또는 인)

위임받은 사람(대리인)

성명

생년월일

신청인과의 관계